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	**보도자료**	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2014년 7월 7일(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문의: FTA 서비스투자과 김명준 과장(044-203-5810)		

'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협정 실질 타결'

- 제7차 협상(2014.6.30.~7.4, 서울) 결과 -

□ 지난 주(6.30~7.4)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-터키 FTA **서비스·투자 협정 협상***에서 한-터키 양측은 협상을 **실질적으로 타결**하였음

*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, 법무부, 외교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

- 터키측은 경제부 야피치(Yapici) EU국장을 수석대표로 사파리(Safali) 전 부과장(서비스분과장) 및 악피나르(Akpinar) 투자과장(투자분과장)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

(협상 경과)

□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 협상*은 제3차 협상('11.3월) 후 중단되었다가 '13.8월 재개되어, 4차례 공식협상과 2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거쳐 타결

* 한-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이에 부속된 상품무역협정, 여타 협정(서비스무역·투자협정 등)으로 구성되어 기본협정 및 상품 분야를 우선 타결, 발효(2013.5.1)

□ 이번 제7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·투자 분야 협정문의 잔여 쟁점과 서비스 양허 및 투자 유보 협상에 전반적으로 합의함으로써 "실질적 타결"에 도달

(협상 타결시 의의)

□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협정을 타결함으로써, 기발효된('13.5.1) 한-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, 상품 분야로만 국한되었던 한-터키 FTA가 "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"로 격상되어 한-터키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

○ 우리로서는 터키 시장 투자 및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·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, 터키의 유럽 및 아중동시장으로의 접근성에 힘입어 해당 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

○ 터키로서는 최초로 FTA에서 서비스·투자협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*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음

* 터키의 기체결 FTA는 모두 상품 분야로만 국한

(주요 합의 내용)

□ 서비스협정은 WTO 서비스협정(GATS)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, 금융,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,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함

○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*으로 하되, 양국이 WTO DDA 양허안**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

* 포지티브(Positive) 자유화방식: 개방 분야를 양허표에 열거

-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, 문화,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

** '05년 WTO DDA(Doha Development Agenda, 도하 개발 아젠다)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서, 현재 유효한 WTO GATS(서비스협정)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

□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-국가간 분쟁해결절차(ISD)도 포함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

○ 한-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(BIT)을 대체할 예정이며,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,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,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, 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

○ 투자자유화는 비서비스 분야(제조업, 농업·어업·임업, 에너지업 등)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*을 채택

* 네거티브(Negative) 자유화방식: 모든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, 개방되지 않는 분야·내용을 유보목록으로 작성

(향후 계획)

□ 향후 실질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, 금년 하반기 중 가서명을 할 예정이며,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

참고 1: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협정 협상 추진 경과
참고 2: 한-터키 FTA 협상타결 주요 결과
참고 3: 한-터키 FTA 교역·투자 현황

끝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 서비스투자과 김명준과장(☎ 044-203-581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협정 협상 추진경과

□ '10.3월 한-터키 FTA 협상 출범 선언

□ '10.4월 ~ '12.3월간 총 4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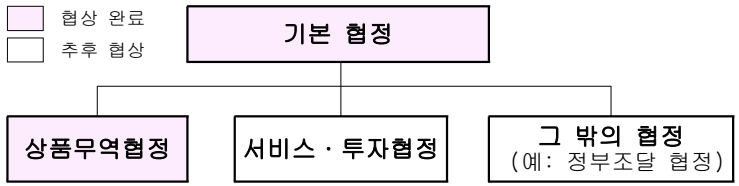
* 공식협상: 1차 '10.4월(앙카라), 2차 '10.7월(서울), 3차 '11.3월(앙카라), 4차 '12.3월(서울)

* 소규모 협상: 1차 '11.11월(서울), 2차 '12.1월(앙카라), 3차 '12.2월(이스탄불)

□ '12.3.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타결

□ '13.5.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**발효**

【 한-터키 FTA 협정 구조 】



□ '13.8.21~22(앙카라) 한-터키 FTA **서비스·투자협정 제4차 협상**

* 서비스·투자협정은 '11.3월 제3차 협상까지 진행 후 중단되어,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(기본협정 제1.5조)

□ '13.11.18~21(서울) 한-터키 FTA **서비스·투자협정 제5차 협상**

□ '14.2.20~21(브뤼셀) 한-터키 FTA 투자협정 회기간 협상

□ '14.4.2~4(앙카라) 한-터키 FTA **서비스·투자협정 제6차 협상**

□ '14.6.9~10(이스탄불) 한-터키 FTA 투자협정 회기간 협상

□ '14.6.30~7.4(서울) 한-터키 FTA **서비스·투자협정 제7차 협상**

참고 2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협정 협상타결 주요 결과

1 서비스 협정

□ 기본적으로 WTO 서비스무역협정(GATS) 구조에 기반하되, 한-EU FTA 수준의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

○ GATS에서와 같이 금융, 통신 등은 부속서 형태로 규율하되, 전자상거래 분야는 별도 챕터로 구성하는 등 한-EU FTA 요소 반영

□ 협정문의 적용 범위

○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서비스 교역*이 적용대상

※ 모든 서비스 모드를 대상으로 함
- 모드 1(국경간 서비스무역), 모드 2(해외소비), 모드 3(상업적 주재), 모드 4(자연인의 이동)

○ "공공안전, 공중도덕·질서, 인간·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한 제한 조치는 "예외"로서 허용

□ 일반적 의무

○ **(내국민대우)**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

○ **(시장접근 제한 금지)** 공급자 및 설립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, 설립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

○ **(합리적인 국내규제)** 자격 요건 및 절차, 기술 표준,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·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할 필요

□ 주요 서비스 양허 내용

○ **(양허 수준 및 개선 내용)** 양국은 자국의 DDA 양허안*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개방에 합의

※ '05년 WTO DDA(Doha Development Agenda, 도하 개발 아젠다)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서, 현재 유효한 WTO GATS(서비스협정)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

○ 터키측은 우리측에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, 영화 비디오 제작·배급, 공연 등 문화 서비스와 환경 서비스 등 총 18개 분야에서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

○ **(인력이동)** 상업적 주재가 허용된 분야의 "핵심인력(Key Personnel: 관리자, 전문 인력, 사업방문자로 구성), 대졸연수생, 상용서비스 판매자"에 대해서는 일정한 체류요건을 전제로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

- 특히 한-EU FTA와 유사하게 대졸연수생을 인력이동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청년층의 상호 인력 교류를 촉진

- 단,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에 대해서는 추후 WTO DDA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포함시키기로 합의

2 투자 협정

□ 협정문의 적용 범위

○ **(서비스 투자 규율)** 서비스 투자(mode3)는 서비스 협정에서 규율하고, 비서비스 투자(제조업, 농업 등)에 한해 투자협정에서 규율

※ 한-미 FTA는 서비스 투자 및 비서비스 투자 모두 투자챕터에서 규율

- 다만, 연계조항을 두어 서비스 투자도 투자협정의 투자보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등하게 보호

□ 일반적 의무

○ **(투자의 대우)** 설립 전(pre-establishment) 투자*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투자 자유화 의무 규정

※ 설립 전 투자: 투자의 진입(admission), 즉 투자 자유화를 의미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○ **(혜택의 부인)**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 기업(페이퍼 컴퍼니)에 대한 투자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

○ **(이행요건 부과금지)**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, 인수, 확장, 경영, 영업, 운영, 매각, 처분 등에 관하여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를 규정

□ 투자자-국가간 분쟁해결절차(ISD)

○ 냉각기간, 제척기간, 준거법, 중재인 임명 등 투자자-국가 간 분쟁해결(ISD) 절차를 상세히 규정

□ 기타 제도적 장치

○ **(간접수용 부속서)** 간접수용의 정의, 간접수용의 판정기준, 간접수용의 예외(환경, 보건, 부동산정책 등)을 명확하게 규정

○ **(단기 세이프가드 부속서)** 한-미 FTA 수준의 송금 조항 부속서를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와 국가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추구

□ 주요 투자 유보 내용

○ **(유보 수준)** 우리의 비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은 한-미 FTA와 유사

- 터키측은 국내적으로 민감한 분야인 부동산 취득, 에너지, 광업, 농업, 어업 및 일부 제조업(의약품, 설탕, 담배 등)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권한 확보

참고 3 한-터키 FTA 교역·투자 현황

□ 교 역

< 한-터키 연도별 무역 현황(백만불, 전년 동기 대비 %) **>**

구 분	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
수 출	금액	3,036	4,087	3,773	2,661	3,753	5,071	4,552	5,658
	증가율	9.1	34.6	△7.7	△29.5	41.1	35.1	△10.2	24.3
수 입	금액	194	282	362	434	516	805	672	692
	증가율	52.5	44.9	28.5	20.0	18.8	55.8	△16.4	2.9
무역규모		3,230	4,369	4,135	3,095	4,269	5,876	5,224	6,350
무역수지		2,842	3,805	3,411	2,227	3,237	4,266	3,880	4,966

< '13년 한-터키 품목별 교역현황(백만불, 전년대비%), HSK 6단위 **>**

순위	수 출			수 입		
	품목명	금액	증가율	품목명	금액	증가율
1	액정 디바이스 (901380)	423	153.6	석유가스 (271119)	183	△37.6
2	블도저·앵글도저 (842952)	159	△11.4	의약품 (300490)	45	1,281.1
3	자동차 부분품 (870899)	152	△4.4	엔진 부분품 (840999)	38	△26.8
4	탱커 (890120)	138	436.0	면역혈청 (300210)	35	-
5	승용차 (870332)	130	△15.4	밀과 메슬린 (100199)	15	139,791, 309.1
	총계	**1,002**		**총계**	**316**	

□ 투 자

(단위 : 천불, ()는 신고건수)

구 분	'08	'09	'10	'11	'12	'13	'14.3월	누 계
터키의 對한국 투자	1,308 (7)	205 (4)	1,977 (10)	916 (7)	2,131 (9)	2,240 (8)	230 (1)	<96~14.3> 15,064 (83)
한국의 對터키 투자	89,797 (30)	247,104 (45)	66,636 (30)	135,842 (39)	292,295 (44)	179,084 (57)	27,936 (10)	<87~14.3> 1,416,637 (366)

* 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수출입은행